

전주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가단21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빈

피 고 1. B

2. 전북신용보증재단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3.

주 문

1. C(D생)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0. 10. 28. 접수 제43931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피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전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 B와 C(D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2,101,324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1)

판사 이창섭

별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인바,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할 공무소의
소재지이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이 법원에 관할이있다.